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545
----------	------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발 의 자 : 이동현, 권영희, 김경우, 김광수,
김제리, 오현정, 우형찬, 이병도,
전병주, 최웅식 의원(10명)

1. 제안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에 따라 자전거 이용이 증가되면서 자전거 보험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나 자전거 이용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보험’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자체 간 선택적 가입 및 보상 차이 존재로 형평성의 문제 발생.

2. 주요골자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자치구에 속하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자전거 보험 가입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의 대상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대상자 및 재정부담의 비율을 정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에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자전거 단체보험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단체보험의 가입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자치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재정분담의 비율은 자치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5조의2(자전거 단체보험 지원)</u></p> <p><u>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단체보험의 가입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자치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재정분담의 비율은 자치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u></p>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안 제15조의2)함에 따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지원비용이 발생 가능할 것이나, 지원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용추계 곤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자치구에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을 지원(안 제15조의2)함에 따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지원비용이 발생 가능할 것이나, 자전거 단체보험은 자치구 인구수, 보장기간, 보장항목(사망, 사고 후유장애,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공공자전거 보험 포함여부 등에 따라 자치구 간 보험금액이 상이하고 지원의 대상 및 재정분담의 비율은 자치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비용추계가 어려움
- ※ ‘20년 3월 기준, 7개 자치구(강북, 성동, 노원, 도봉, 서대문, 서초, 강동)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자전거 보험 규정을 두고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여 운영(예정 포함)하고 있고, 그 외 자치구는 조례에 자전거 보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거나 조례에 자전거 보험 규정이 없음

〈서울시 자치구 자전거 보험 비교〉

구분	강북구	성동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서초구	강동구
피보험자	강북구민	성동구민	노원구민	도봉구민	서대문구민	서초구민	강동구민
인구	313,705명 (2020.1.31. 기준)	304,936명 (2019.6.30. 기준)	532,905명 (2019.12.31. 기준)	332,753명 (2020.1.31. 기준)	310,809명 (2019.1.31. 기준)	432,762명 (2019.3.31. 기준)	436,067명 (2019.12.31. 기준)
보장기간	1년 (2019.4.1.~2020.3.31.)	1년 (2019.10.1.~2020.9.30.)	1년 (2020.3.1.~2021.2.28.)	1년 (2020.4.~2021.4. 예정)	1년 (2019.4.10.~2020.4.9.)	1년 (2019.6.1.~2020.5.30.)	1년 (2020.3.1.~2021.2.28.)
보험금액	약60백만원	약105백만원 (*성동구 공공자전거 보험료 포함)	약188백만원 (*노원구 공공자전거 보험료 포함)	약98백만원 (예상) (*보험계약 미체결)	약98백만원 (*서대문구 공공자전거 보험료 포함)	약130백만원	약136백만원

※ 자료 :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2020.3), 서울시 자전거 보험 도입을 위한 자료조사.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 석 관 이수아

☎ 02-2180-7944

e-mail : sua8873@seoul.go.kr